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선거
이후 정치현안 및 주요 정책전망

1998. 6

전 현 준(북한연구실장)

최 진 욱(북한연구실 연구위원)

박 형 중(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홍 용 표(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요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선거를 7월 26일 실시기로 결정하였는 바, 대의원선거 이후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면 국가수반 선출문제와 개헌문제가 다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수정 및 법령제정, 예산심의권 뿐만 아니라, 주석을 비롯한 주요 직책에 대한 선출권을 보유함.
- 현재로서는 김정일이 국가수반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나, 제3자가 국가수반직을 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김정일이 국가수반직을 맡는다면 유일체제의 속성상 권력의 분립을 전제로 한 현행헌법은 유지되기 어려우며, 국가수반의 권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북한은 현행헌법을 유지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권력분산형 권력구조를 선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김정일이 주석에 취임함으로써 권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음.

○김정일이 경제난 등 실정에 대한 책임회피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국가수반직을 맡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바, 이 경우 북한은 주석직을 폐지하고 권한이 대폭 약화된 명목상의 국가수반직을 신설하는 개헌을 단행할 것으로 보임.

-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장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이 국가수반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내각은 '72년 주석제가 신설되기 이전의 수상제로 되돌아 가게 됨.

- 대의원선거 이후 분야별 북한의 정책은 다음과 같이 전망됨.
 - 정치 분야: 사망, 질병, 숙청 등으로 공석이 된 주요 직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함.
 - 경제 분야: 지난 수년간의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제한적이나마 변화할 것으로 보이며,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위해 대외경제관계의 확대를 모색할 것임.
 - 대외 분야: 인민경제발전계획에 필요한 외화획득과 체제수호·유지를 위해 대미·일관계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 대남 분야: 김정일 정권이 안정됨에 따라 남북대화에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음.

- 정부는 원만한 남북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회적으로 김정일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김정일이 국가수반직을 맡지 않을 경우 남북정상회담의 공식상대역의 선정문제 검토 필요성

- 북한이 대외경제관계 확대를 추구할 경우 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해야 할 것임.

- 목 차 -

I. 문제의 제기	1
II. 제10기 대의원선거 배경 및 일정	2
1. 배경	2
2. 일정	2
III. 국가수반문제와 개헌문제	4
1. 김정일이 국가수반이 되는 경우	4
2. 김정일이 국가수반이 되지 않는 경우	5
IV. 주요 정책 전망	7
1. 정치 분야	7
2. 경제 분야	8
3. 대외 분야	9
4. 대남 분야	10
V. 대북정책의 고려사항	11
1. 김정일체제 인정문제	11
2. 대북 경제 지원문제	12
3.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문제	12
<별첨 1> 최고인민회의 지위 및 권한	14
<별첨 2> 역대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15

I. 문제의 제기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를 통해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선거를 7월 26일 실시하기로 결정함(5.20).

-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헌법상 5년이나 '90년 4월 9기 대의원선거 이후 8년 이상 임기가 계속되었음.

○대의원선거 이후 제10기 1차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면 헌법개정 문제와 주석선출 문제가 다루어지며 주요 인사에 대한 후속인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최고인민회의는 '94년 4월 7차회의 이후 개최된 바 없음.

○본 보고서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배경과 이후 개최될 제10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다루어질 의제 및 사안별 정책방향을 전망하고 우리의 대북정책 고려사항을 도출하고자 함.

II. 제10기 대의원선거 배경 및 일정

1. 배경

-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최고권력기관으로 헌법상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나 최근 4년 이상 회의조차 개최되지 못하였음.
 -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수정 및 법령제정, 예산심의권 뿐만 아니라, 주석, 부주석, 국방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서기장과 부문별 위원장, 중앙재판소 소장, 정부원 총리, 부총리, 위원장, 부장에 대한 선출권을 보유함.
 - 김일성 사망 이후 국가수반인 주석의 공석상태가 지속되었음.

- 대의원선거 이후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면 국가수반의 공석문제를 해결하고 조직 및 인사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법적 절차를 회복하고 정치체제를 정상화시킬 수 있음.
 - 경제난 해결을 위해서는 대외관계개선과 최소한의 대남관계개선이 불가피한 바, 국가수반의 부재는 이에 제약요인이었음.

2. 일정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관련 정치일정은 다음과 같이 전망됨.
 - 후보자 추천·지지대회 시작(6.26)

- 후보자 등록 완료 발표(7.14)
- 투표(7.26)
- 제1차회의 소집공고(8.6)
- 제1차회의(8월말)

○대의원수는 인구 3만명당 1인으로 650~700명 정도가 될 것임.

- 제8기('86)와 제9기('90)대의원 수는 각각 655명과 687명이었음

Ⅲ. 국가수반문제와 개헌문제

○대의원선거 이후 개최될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정일의 국가수반직 승계문제가 매듭지어 지고, 국가수반의 위상과 관련된 개헌문제가 다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현재로서는 김정일이 국가수반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나, 제3자가 국가수반직을 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1. 김정일이 국가수반이 되는 경우

○현재 북한의 경제난 등 주변 여건이 김정일의 국가수반 취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나, 김정일은 “현재와 미래의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세우기 위해 국가수반직에 오를 가능성이 높음.

- 김정일은 국가수반직 취임을 계기로 난국을 앞장서 헤쳐나가는 지도자상을 부각시키려 할 것임.

○김정일이 국가수반직을 맡는다면 유일체제의 속성상 권력의 분립을 전제로 한 현행헌법은 유지되기 어려우며,¹⁾ 국가수반의 권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1) '92년 개정된 헌법에서는 주석이 국방위원장을 겸임하지 않으며 국가주석에 대한 최고인민회의의 소환권이 신설되는 등 국가주석의 권한이 대폭 약화된 바 있음. 이는 김일성 생존시 김정일에게 국방위원장을 맡겨 군권을 이양하기 위한 세습작업의 일환으로 과도기적 현상임.

- 현행헌법하에서 주석은 정무원회의를 소집하고 지도할 수 있으나, 총리와 각 부장에 대한 임면권이 없는 등 행정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하지 못함.
 - 개헌을 통해 김정일이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국가평의회) 의장, 각료회의 의장, 군의 최고통수권자로서 입법, 행정, 군의 실질적 책임자로서 전면에 나섬.
 - * 강력한 국가수반직이란 비상시국을 헤쳐나가는 위기관리체제로서 쿠바나 과거 루마니아식의 대통령제를 의미함.
- 한편 북한은 현행헌법을 유지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권력분산형 권력구조를 선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김정일이 주석에 취임함으로써 권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음.²⁾
- 향후 상황변화에 따라 헌법규정에 입각하여 실질적으로 권력 분산이 이루어질 여지도 있음.

2. 김정일이 국가수반이 되지 않는 경우

- 김정일이 국가수반직을 맡지 않을 가능성의 요인
 - 국가수반직을 맡을 경우 경제난 등 실정에 대한 책임을 피할

2) 북한의 '92년 헌법은 김정일의 승계작업의 일환으로서 개정된 과도기적 성격 뿐만 아니라 동구사회주의권 붕괴라는 시대적 조류를 반영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음. 즉 개정헌법은 권력분산이라는 당시 사회주의권의 정치체제 변화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90년대 초반 베트남, 라오스 등 아시아 사회주의국가들이 유사한 개헌을 하였음.

수 없음.

- 국가수반직을 맡을 경우 남북정상회담 개최시 직접 나서야 되는 부담을 짐.

○이 경우 북한은 주석직을 폐지하고 권한이 대폭 약화된 명목상의 국가수반직을 신설하는 개헌을 단행할 것으로 보임.

-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장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이 국가수반의 역할을 할 수 있음.

- 내각은 '72년 주석제가 신설되기 이전의 수상제로 되돌아 가게 됨.

- 주석직은 오직 김일성만이 갖는 직책으로서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함.

IV. 주요 정책 전망

1. 정치 분야

- 북한은 대의원선거 이후 그간 사망, 질병, 숙청 등으로 공석이 된 주요 직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당과 국가기구를 정비할 가능성이 있는 바, 공석중인 당과 국가의 주요직책은 다음과 같음.
 - 당중앙군사위원장, 당중앙검사위원장, 당중앙검열위원장, 국제담당비서, 농업담당비서, 정치국상무위원, 일부 정치국원, 정치국후보위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 정무원 총리(*강성산 총리 와병중), 화학공업부장, 농업위원장, 선박공업부장,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부의장
 - 인민무력부장,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최고검찰소장

- 주요 보직에 김정일 휘하의 신진 인물들을 대거 기용할 가능성이 큼.
 - 김정일세대의 측근실세들이 전면에 나섬으로써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내부 사기를 진작시키려 할 것임.

- 당의 조직 및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 직전에 당중앙위 전원회의도 소집될 것으로 보임.
 - '80년 김정일 후계작업의 일환으로 구성된 당정치국 상무위원회는 폐지될 것으로 보임.

* 당 전원회의는 '93년 12월 6기 21차회의 이후 소집되지 않았음.

○지난 수년간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암시장이 번성하고 관리의 부패가 만연하는 등 사회적 기강이 해이됨에 따라 북한은 군부, 사회안전부, 국가안전보위부 등을 통한 사회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임.

- 김정일은 총비서나 국가주석의 취임과 무관하게 여전히 조선 인민군 총사령관으로서 사실상 계속 비상동원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2. 경제 분야

○지난 수년간의 경제난 속에서 북한은 농민시장, 외화벌이, 비공식 교역 등이 활발해졌으며, 지방의 자력갱생이 강조되는 등 중앙관리 경제체제가 이완되었음.

○향후 북한경제가 과거의 중앙관리 경제체제로 완전히 복원되기는 어려우며, 지난 수년간의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제한적이거나 변화할 것으로 보임.

- 북한은 기간산업인 연료, 원료, 수송, 중화학공업 등에서는 계획체제를 고수하고자 할 것이나, 터발과 농민시장의 확대, 농업과 수공업 소생산자의 생산물 자유처분권 인정, 지방공업의

○ '독립채산제' 강화를 통한 부분적 분권화정책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은 시급한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위해 대외경제관계의 확대를 모색할 것임.

- 이를 위해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와 일본의 배상자금 도입 및 UNDP, IBRD, World Bank, ADB 등 국제기구와의 접촉확대 노력을 강화하려 할 것임.

- 나진·선봉 지역의 투자여건 개선, 원산·남포·신의주 추가 개방,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나진·선봉 및 백두산·금강산 지역의 부분적 개방을 추진해 나갈 가능성이 큼.

3. 대외 분야

○ 북한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필요한 외화획득과 체제수호·유지를 위해 대미·일관계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 북·미평화협정체결과 주한미군철수 주장을 협상수단으로 삼으면서, 1단계로 연락사무소 개설 수준의 대미관계개선을 추진하려 할 것임.

- 민간외교에서 유연한 태도를 취하면서, 나진·선봉 특구 활성화 문제를 중심으로 한 대일경협에 적극적 태도를 취할 것임.

- 중국·러시아와의 전통적 친선관계 유지·회복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것임.
- 북·중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하며, '대만 카드'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도 있음.

4. 대남 분야

- 북한의 대남정책은 김정일의 「8·4노작」, 「4·18서한」 등에 나타난 노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나, 김정일 정권이 안정됨에 따라 남북대화에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은 「민족대단결 5대방침」에 입각, 남북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통일전선 차원의 대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등 대남 2중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신정부의 정경분리원칙에 편승 민간경제교류를 확대하려 할 것이며, 특히 '정주영式' 이벤트 사업에 치중할 것으로 보임.
- 상황에 따라 남북적십자회담, 남북·해외 범민련회담, 남북학생회담, 남북체육회담, 사회문화분야 민간급대화를 비롯, 북경회담유형의 당국자회담(차관급 회담 등), 국회회담 예비접촉 등 이른바 「쌍무적·다무적 접촉」 형태의 다각적 회담을 제의할 것으로 보임.

V. 대북정책의 고려사항

1. 김정일체제 인정문제

○ 대북정책에 대한 내부 이견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남북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북한체제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김정일이 국가수반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에 대비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함.

○ 김정일이 국가수반직에 취임할 경우 정상회담의 공식지위 취임의 상징적 의미와 남북관계 개선의 촉진요인으로 작용하기를 바라는 내용의 정부대변인 성명 또는 논평 고려, 우회적으로 김정일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참고: '97년 10월 김정일의 총비서 취임시 이것이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 「통일원 대변인 성명」의 경우³⁾

○ 김정일이 국가수반직을 맡지 않을 경우 남북정상회담의 공식상대역의 선정문제 검토 필요성

3) 당시 통일원은 “정부는 북한이 김정일을 당 총비서로 ‘공식추대’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이 이를 계기로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하였음.

2. 대북 경제 지원문제

○ 김정일이 권력구조 개편을 계기로 새로운 경제발전 계획을 세우고, 재원 및 기술 도입을 위해 대외경제관계 확대를 추구할 경우 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해야 할 것임.

- 합영사업, 관광사업, 농업기술지원 등과 같이 계속성이 보장되며 인적 접촉의 증대를 유발할 수 있는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미간의 정책조율을 통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시킴으로써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확대와 그 효과의 실효성을 높임.

○ 북한은 경제난의 지속과 중앙관리 경제체제의 이완으로 지방 및 하부 단위의 자력갱생이 강요되는 바, 지방 및 하부 단위가 외부에 독자적으로 원조를 요청할 경우 이러한 요구의 수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남북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를 신중히 검토할 가능성 불배제

3.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문제

○ 북한의 대미·일관계 개선은 북한의 개방과 한반도 평화체제 확

립의 순기능적 요인을 감안, 전향적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 한·미·일간의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대북 교섭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권이 유지되도록 해야 함.

○ '북·중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비롯한 북한의 대중 친선관계 유지·회복 노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시하되, 중국식 개방·개혁정책의 북한 적용 가능성에 관심을 표명함.

<별첨 1> 최고인민회의의 지위 및 권한

○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임(헌법 제 87조).

- 헌법은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으로 20개의 항목을 설정하고 있음(헌법 제 91조).

1. 헌법 수정
2. 법률 제정 또는 수정
3. 휴회중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채택한 법을 승인
4. 국가 대내외정책의 기본을 수립
5. 주석을 선거 또는 소환
6. 주석의 제의에 의해 부주석을 선거 또는 소환
7.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
8.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
9.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
10.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서기장, 의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
11. 최고인민회의의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
13.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
14.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
15.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부장, 그밖의 정무원 성원들을 임명
16.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
17.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
18. 최고인민회의가 조직한 중앙국가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움.
19.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폐기
20.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 결정

<별첨 2> 역대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기별	선거일	대의원 수	재임기간	회의소집 횟수
1	1948.8.25	572	9년	13
2	1957.8.27	215	5년 1개월	11
3	1962.10.8	383	5년 1개월	7
4	1967.11.25	457	5년	6
5	1972.11.25	541	5년	7
6	1977.11.11	579	4년 4개월	5
7	1982.2.28	615	4년 9개월	5
8	1986.11.2	655	3년 5개월	5
9	1990.4.22	687	8년 4개월	7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헌법상 임기는 제1기 3년, 제2~9기 4년, '92년 4월 9일 헌법개정에서 5년으로 바뀌었음.

* 최고인민회의의 마지막 회의는 제9기 7차회의로서 '94년 4월 6일부터 8일까지 열렸음.

最近 發刊資料 案内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著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著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著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著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著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鄭永泰	著	6,000원
96-07	韓·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研究	金國新	著	4,000원
96-08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	余仁坤 金永椿 申相振 외 共著		10,000원
96-09	北韓 經濟改革의 最適方向 研究	吳承烈	著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著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著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著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著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著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전성훈 著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著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 이우영 김영운 외 共著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著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著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著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著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 정영태 오승렬 외 共著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著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著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헌경	著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著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著	5,500원
96-29	韓·中 安保協力方案 研究	崔春欽	著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著	5,000원
97-02	북·일 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著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著	7,000원
97-04	중·북관계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著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著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 배정호 신상진 조한범외共著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옥태환 김수암	共著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著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著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著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계: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著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著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著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著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著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著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著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계	정영태	著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著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著	5,000원
97-21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著	5,500원
97-22	북한 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著	3,000원
97-23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운	著	6,000원
97-24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현경	著	4,000원
97-25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박종철	著	5,5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의共著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의共著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
송정호 共著 7,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8

최의철
송정호 共著 \$11.95

■ 연례정세보고서

96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6~1997 6,000원

97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7~1998 5,0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南北韓關係 現況 및 '97年 情勢 展望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98-01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9,000원
98-02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7,5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上)	10,000원
96-02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下)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統一研究論叢,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5 (1996) 6,500원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6 (1997) 9,000원

■ Translation Series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Regime Sustainability 7,000원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 6,500원

민족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민족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 2) 연 회 비 :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민족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 할 수 있습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민족통일연구원 정보자료실 (전화:901-2604, 901-2559, FAX:901-2547)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선거 이후
정치현안 및 주요 정책전망

統一情勢分析 98-02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 901-2525(代), FAX : 901-2542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66-0892
印刷日 1998년 6월 일
發行日 1998년 6월 일
